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

2026. 9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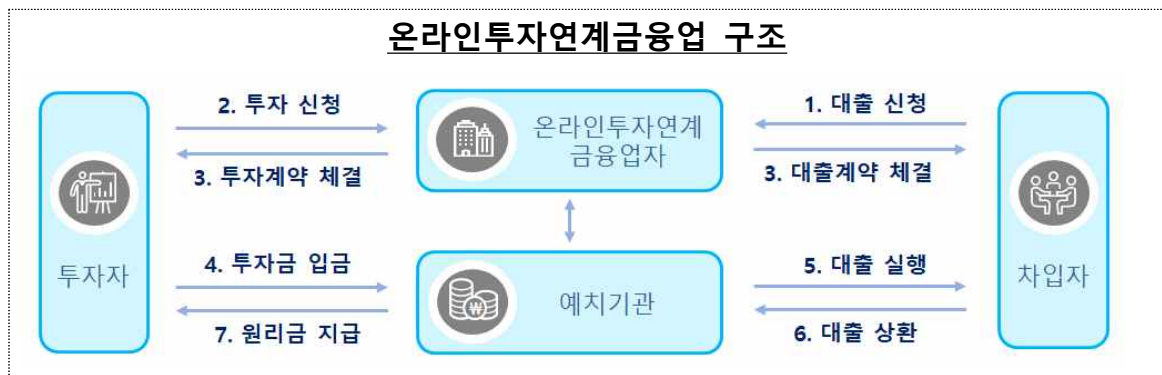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	1
II. 개선이 필요한 온투업계 영업 관행	3
III.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	4
IV. 추진 계획	12

I. 추진 배경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(P2P대출)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

○ 거래비용이 저렴*하여 차입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핀테크 혁신의 한 분야로 등장

* 온라인 기반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간접비·운영비 절감,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



□ 국내 P2P 시장은 '06년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'16년 이후 핀테크 활성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성장

* (업체수/누적대출액) '16년말 125개사, 6,289억원 → '18.9월 205개사, 4조 2,726억원

○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, 개인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표방

□ P2P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·차입자 보호를 위해 '17.2월 「P2P 대출 가이드라인」을 거쳐 '20.8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* 시행

* 진입제도(등록의무·최소자본금), 영업행위 규제(정보공시·금지행위), 투자자·차입자 보호제도(투자금 분리보관·투자한도)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규율

※ 온투업 법제화 이전 P2P는 대출 형태에 따라 대부업법, 연계금융회사(저축은행 등)에 관한 법령(저축은행법 등)을 통해 규율

□ 이후 온투업권의 투자모집 여건이 악화되고 연체율도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'23년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* 대출잔액(억원) : '21년말 10,696 → '22년말 13,246 → '23.3월말 11,931 → '23.5월 10,985
연체율(%) : '21년말 4.7 → '22년말 4.7 → '23.3월말 8.0 → '23.5월 10.1

○ 개인투자자에 대해 ①투자 한도(3천만원 → 4천만원) 및 ②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한도(1천만원 → 2천만원) 확대

○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, 중앙기록관리기관* 이용 수수료율을 인하(0.24→0.164%)

* 금결원이 차입자 대출한도, 투자자 투자한도, 대출상환, 원리금지급 등 정보 관리

□ '24.7월, 금융회사의 온투업 연계투자를 통해 자금조달 기반 마련

○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한 저축은행의 연계대출을 허용('24.7월, 29개 저축은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○ 이후 저축은행('26.1월, 20개사) 및 지역농협 추가 지정('26.1월, 10개사)

□ 그러나,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안금융, 금융혁신이라는 설립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임

○ 온투업계 영업행태가 여타 여신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운데, 대안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한 중·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미흡*

*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 : 온투업(63.1%) vs 저축은행(99.7%), 보험사(95.3%), 여전사(99.6%)

○ 특히, 담보 위주*의 손쉬운 대출 영업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

* '25년말 기준 부동산담보(40.5%), 스탭론(33.3%) 등 70% 이상이 담보대출
특히, 6억원 초과 고액 주담대 등 이상거래 다수 확인 → LTV 적용('26.4.2.)

➡ 온투업권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시장, IT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

Ⅱ. 개선이 필요한 온투업계 영업 관행

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도입 취지 저해

-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.6% 수준*으로, 자체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보유한 업체는 47개사 중 7개사(15%)에 불과

* 신용대출 비중(%) : ('21)9.5 → ('22)16.0 → ('23)13.0 → ('24)8.6 → ('25)11.1

-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 또한 타 업권대비 낮은 수준

* 온투업(63.1%) vs 저축은행(99.7%), 보험사(95.3%), 여전사(99.6%)

② 손쉬운 담보대출(부동산담보·스탁론 등)에 편중된 영업 행태 지속

-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경기 둔화, 스탭론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 하락하였으나, '25년 40.5%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
* 부동산담보대출 비중(%) : ('21)72.2 → ('22)70.1 → ('23)61.0 → ('24)53.7 → ('25)40.5

- 스탭론 비중은 '23년 2.9%에서 '26.6월말 39.0%로 급격히 상승

* 스탭론 비중(%) : ('23)2.9 → ('24)15.9 → ('25)33.3 → ('26.6월말)39.0

③ 이에 반해, 업계의 내부통제 장치가 취약하고 부실 온투업자의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권의 신뢰도 저하

- 연체율 등 경영정보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하고 불전건 광고 방지, 연체채권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자율규제 장치 미비
- 자기자본 미달 등 등록취소 대상이거나 영업 종료를 원하더라도 잔여채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등록취소가 곤란

- 등록 취소된 온투업자에 대해서는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*가 적용되지 않고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권한이 부재

* 계약서류 교부·보관(\$23), 투자금등 분리보관(\$26), 대출채권의 도산절연(\$28) 등

Ⅲ.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

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안금융 역할 강화 및 신뢰 제고

① 중저신용자 개인·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확대

- 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
- ② 금융회사 연계투자 추가 허용
- ③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상향

② 차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

- ① 차입자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한 API 신설
- ②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(SCB) 활용 지원

③ 온투업권 신뢰도 제고

- ① 경영지표의 신뢰성 제고
- ② 온투협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
- ③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절차 마련

1. 중저신용자 개인·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확대

1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

- (우수 온투업자 기준안)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이 높고 자기자본, 연체율 등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를 선정

< 우수 온투업자 기준 예시 >

- ①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을 것
 - *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또는 업무정지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② 최근 3년간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, 중저신용자* 대출 비중 60% 이상 또는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1회 이상일 것
 - * 개인신용평점 하위 50%, 개인사업자 신용평점(또는 대표자 신용평점) 하위 50% 이하
- ③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 및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,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5% 이하일 것
- ④ 자기자본 10억원 이상,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5% 미만일 것

- (인센티브 부여) 중저신용자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한도, 투자방식 등 인센티브 부여

① 자기계산 연계투자 확대

- (현행)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대출액의 80% 이상 모집시 20% 이내,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

*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(자기자본-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)의 5% 이내에서 허용

- 부실 위험이 높은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투자자 모집 및 대출 실행이 어려워 대안신용평가 모델의 검증 기회가 부족

- (개선안) 중저신용자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하여 모집액의 일정비율(예: 40%) 이내에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확대

* 단, 총 자기계산 연계투자 잔액은 자기자본 범위 내,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(자기자본-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)의 5% 이내에서 허용

-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의 검증 기회 부여, 신용이력부족자의 금융이력 축적 및 신용도 개선 유도

②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 완화(모집액의 40% → 50%)

- (현행) 금융기관 연계투자 시 모집금액의 40% 투자한도 적용*, 최소 3개 이상 금융회사를 모집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

* (예시) 1,200만원 대출 시 저축은행 1개당 480만원(40%)까지 연계투자 가능

- (개선) 중저신용자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대출상품별 모집액의 40% → 50%까지 확대

* (예시) 1,200만원 대출 시 2개 저축은행이 600만원(50%)씩 투자하여 실행 가능

③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분산투자 허용

- (현행) 소액분산투자 서비스*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사실상 운영이 제한

* 투자자가 건당 투자금, 상품유형, 만기, 위험등급 등 사전에 투자조건을 설정하면 온투업자가 해당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서비스

- 소액분산투자는 투자자의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임에도 투자자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*한 측면

* (예시) 100만원의 투자금을 각 대출상품별 1만원씩 분산투자하기 위해 투자조건에 맞는 상품 모집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100건의 대출상품에 건별로 투자해야 함

- (개선안) 온투법 등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소액분산투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 내에서 허용

※ 소액분산투자 허용 기준(안)

- (대상 상품)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대출
- (투자자별 한도) P2P업체당 1천만원, 대출상품 건당 10만원 이내
- (투자금·상환금 관리) 실명계좌와 연결된 투자자별 가상계좌에 구분하여 관리
- (투자조건 설정)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하도록 최소 투자조건* 수(예: 20개)를 설정
 - * (예) 전체 투자금, 건당 투자금액, 상품유형, 만기, 예상수익률, 차주 신용평점, 위험등급 등
- (포트폴리오 제시) 온투업자가 투자조건에 맞는 대출상품 중 일부만 선정하는 등 개입 금지, 투자자 간 경합 발생시 특정 이용자 우대·차별 금지
- (포트폴리오 구성)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70% 이상
- (투자자 보호) 포트폴리오 내 개별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및 투자자 확인 이행,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최종 선택권 보장

*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투자 신청을 하거나, 모집 완료 이전에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

⇒ (조치사항) 혁신금융서비스 심사

2 금융회사 연계투자 추가 허용

- (현행) 저축은행(49개사), 지역농협(10개사)에 대해 샌드박스*를 통해 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

* (저축은행) '24.7월 29개, '26.1월 20개 지정, '26.7월말 기준 23개사가 5,080억원 투자
(지역농협) '26.1월 10개 지정,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

※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는 대출로 간주(법§35②)하여 여신심사, 대출채권 매매, 금리인하 요구 등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곤란

- (개선안)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 확대 추진(샌드박스 지정*)

* 자체 CSS와 교차검증, 연체율 기준, 상호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설정 등 검토

- 금융회사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 →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(「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」('26.2월) 既 발표)

⇒ (조치사항) 혁신금융서비스 심사

3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상향

- (현행) 일반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 4천만원으로 제한

※ 클라우드 펀딩 투자한도: 일반투자자 1천만원, 적격투자자 2천만원, 전문투자자 無

- (개선안) 일반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5천만원*으로 상향

* 2025년 가구 평균 순자산액(4.7억원)의 10% 수준

< 온투업 투자한도 확대(안) >

구분	현행			개선	
	업권 전체	동일 차주		업권 전체	동일 차주
일반개인	4천만원 (부동산 담보 2천만원)	5백만원	⇒	5천만원 (부동산 담보 2천만원)	좌 동
소득적격 개인 ¹⁾	1억원	2천만원		좌 동	좌 동
법인·전문투자자 ²⁾	한도 없음	대출 모집금액의 40%		좌 동	좌 동

1) 금융소득(이자·배당소득) 2천만원 또는 근로·사업소득 1억원 초과

2) ①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 5천만원 이상, ②소득(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.5억원 ↑), 자산(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제외 5억원 ↑), 전문성회계사, 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중 1개 이상 충족

⇒ (조치사항) 온투업 감독규정 개정

2. 차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

1 차입자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

- (현행) 차입자가 만기연장 요청시 기존 대출 상환을 완료한 후 신규 대출계약으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함에 따라 비용이 과도
 - 차입자가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투자자가 만기연장에 동의 하더라도 투자한도에 중복 계상되어 만기연장 상품에 투자 곤란
- * (예시) 투자자가 A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여 투자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, 만기연장에 동의하더라도 A가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잔여한도가 없어 투자 불가
- (개선안)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상 만기연장 API 기능 신설
 - 투자자가 기존 투자규모 내에서 만기연장 가능, 투자자 일부가 투자회수 시 투자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이 가능*
- * 기존 대출액의 30%에 대한 투자회수 시, ①대출 전체가 아닌 30%에 대한 추가 모집을 통해 만기 연장 또는 ②차입자투자자 의사 재확인 후 70%에 대한 대출 실행 가능

⇒ (조치사항) 중앙기록관리기관 API 개발

2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(SCB) 활용 지원

- (현행) 온투업은 주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·활용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상 연계대출 활성화는 한계*
- *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취급사 5개, 개인사업자 전용 CSS 보유사 5개
연계대출 비중('25년말) : 개인사업자(2.9%), 법인(19.6%), 개인(77.5%)
- (개선안) 온투업자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(SCB)*을 여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 유도
- * 매출·업종·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 기반 성장등급(S등급)을 CB등급에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→ '26.8월말부터 시범운영 개시

⇒ (조치사항) 온투업자·신용정보원·CB사 간 시스템 연계 추진

* 주요 온투업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

3. 온투업권 신뢰도 제고

1 경영 지표의 신뢰성 제고

- (현행) 연계대출 현황, 연체율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외부검증을 받지 않아* 경영 지표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건전성 감독에 한계

* 온투업자는 연간 재무현황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으나, 연계대출채권은 투자자 재산으로서 온투업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

- 연계대출의 상환가능성이 없고 매각이 불가능해도 부실채권 정리 근거가 없어, 구조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지속되는 상황

- (개선안)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외부검증 및 공시를 강화하고,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여 연체율 정보의 왜곡을 방지

① 온투업자 재무현황 외에 연계대출 현황,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도입

* 연간 재무현황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시 분기별 연계대출채권 연체 현황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의무화

② 연계대출 연체율 외에 손실률*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

* (예) 매각·제각 연계대출 채권의 실손실액 / 평균 연계대출 잔액

< 투자자 경영지표 활용방안 예시 >

구 분	연체율 高	연체율 低
손실률 高	심사역량·사후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흡	사후관리 역량 미흡 (대출채권 매각에 과도한 의존)
손실률 低	심사역량 다소 미흡하나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역량 보유	전반적인 역량 양호

③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*한 경우, 일정 비율(예: 2/3) 이상 투자자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 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(예) 「채무자회생법」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, 차입자 파산, 차입자의 사망·실종, 담보물 환가절차 종료 등으로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

⇒ (조치사항) 온투법령 및 시행세칙 개정

2 온투협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

- (현행) 규제우회를 시사하는 불건전 광고 등 영업 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한 업권의 자율규제 기능 미흡*

* 법상 광고 자율심의, 자율규제업무 등 협회의 업무권한이 있으나 운영이 미흡

- 또한, 온투법 상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한 선관 의무가 있으나, 부실채권 관리 절차에 관한 업계 모범규준 부재

- (개선안) 불건전 광고 및 장기연체 대출 관리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

① 불건전 광고 사전검증 및 사후 조치요구* 체계 도입

* 광고 사전신고(체크리스트 자체평가) → 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시 사후 조치(정정·중단요구)

② 차입자의 상환능력, 담보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, 채무조정 기준 수립 등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마련

⇒ (조치사항) 온투협회 자율규제 도입

(불건전 광고 검증체계, 장기연체 연계대출 관리 가이드라인)

3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절차 마련

- (현행) 온투법은 온투업자가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에 위탁할 의무*를 규정

* 영업중단 시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(법§10① II), 법무법인 등 위탁(§27④)

- 그러나, 온투업자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잔여채권 정리 등 청산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* 발생

* 온투업자가 인건비, 기본적인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해 청산절차 위탁기관을 통한 잔여채권 원리금 상환 배분, 잔여채권 매각 등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

- 자기자본 미달 등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*로 신속한 퇴출이 어려운 상황

* 현재 온투협회 「자발적 영업종료 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」(‘22.11월)에 따라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지도 중

□ (개선안) 부실 온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직권말소·등록취소 이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·감독 장치 마련

❶ 제재를 위한 등록취소와 온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기 위한 직권말소를 구분하고, 재진입 제한 기간을 차등화

< 온투업자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 구분 예시 >

구 분	등록취소	직권말소
사유	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■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■ 영업정지 명령 위반 ■ 영업정지 처분 사유 미시정으로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3회 이상	■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영업 미개시 또는 개시 이후 6개월 이상 미영위 ■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미제출하고, 금융위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제출 ■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■ 파산선고
재진입 제한기간	■ (해당 업체) 5년 ■ (대주주) 영구	■ (해당 업체) 3년 ■ (대주주) 5년

❷ 온투업자 폐업 시 영업중단 사전 공지, 민원창구 운영, 개인·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화

❸ 등록말소·취소 후에도 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온투업자 지위 유지*, 청산 수탁기관-중앙기록관리기관 간 정보제공** 등 제도 보완

* 대부업법(§14)은 등록취소 후에도 대부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상 의무 적용, 감독당국의 관리·감독 가능

** 청산 수탁기관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부터 잔존채권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·정산

❹ 연계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권리(담보물 매각 대금, 채권매각 대금 등)도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하고 연계대출채권과 동일한 보호장치* 마련

* 차입자 상환금은 예치·신탁방식으로 보호하고 상계·압류 등이 금지되나, 담보물 매각대금, 채권 매각대금 등은 투자자 재산임에도 명시적인 보호장치 부재

⇒ (조치사항) 온투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

IV. 추진 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소관	일정	시행(안)
1.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				
1-1.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	혁신금융서비스 심사	금융위	'26.4Q	'27.3월
1-2. 금융회사 연계투자 추가 허용	혁신금융서비스 심사	금융위	'26.4Q	'27.3월
1-3.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상향	온투업 감독규정 개정	금융위	'26.4Q	'27.3월
2. 중저신용자 자금 중개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				
2-1. 차입자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한 API 신설	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개발	금결원	'27.1Q	'27.4월
2-2.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(SCB) 활용 지원	신정원·CB사·업계 협의 (전산개발 등 시스템 연계)	신정원 업계	'26.4Q	'27.3월
3. 온투업권 신뢰도 제고				
3-1. 경영지표의 신뢰성 제고	시행세척 개정	금감원	'27.1Q	'27.4월
	온투법령 개정	금융위	'27.2Q	'27.4Q
3-2. 온투협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	협회 자율규제 도입	온투협회	'26.4Q	'27.1월
3-3.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절차 마련	온투법령 개정	금융위	'27.2Q	'27.4Q